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 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- 143호(2012.10.31)

2. 위 근거와 관련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-126호, 2012.9.28.)」가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1. 개정 고시 전문 1부

2.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

※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)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수신처

감, 을

대리 이재신 차장 류향수 전문위원 박상우 국장 최금숙

시행 : 보험 제 2012-603 (2012.11.01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ljs@kha.or.kr